

# 『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 
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  
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 
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자치구의 긴급한 재해복구, 공공시설의 신설·보수 등 특  
별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부하는 특

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교부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에 이를 알리고 협의케 하고자 합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